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

3. 주요내용

-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6건의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례 개정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계리	회계처리	사력	자갈
부락	마을	계기	규정

- 「구미시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외 9건의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

기 존	개정(안)	기 존	개정(안)	기 존	개정(안)
경제통상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담당관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	교통정책과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관광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과		대중교통과
안전행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민원봉사과	행정민원과
경제기획국	담당국		노인장애인과	유통축산과	축산과
투자통상과	기업지원과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유통과
과학경제과	신산업정책과	환경안전과	환경보전과	기술개발과	유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도로과	농업기술센터	선산출장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 검토 결과,

-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